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태국/방콕지사 작성)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변경사항
 - 없음
2. 시사점
 - 없음

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1. 통관동향 등 이슈
 - 없음
2. 변동사항
 - 태국 보건부는 현 상황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관련 개정안 발표하여 식품첨가물의 규정, 조건, 방법 및 최대사용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.
 - 공지일: 2020년 9월 2일
 - 적용시점: 2020년 10월 9일(정부관보 게시일 기준)
 - *[붙임] 태국 보건부 공지 No.418 공지 참고

III 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1. 통관거부사례(기준일)
 - 없음
2. 시사점
 - 없음

IV FTA 이행이슈 관련

1. 관련이슈
 - 없음
2. 시사점
 - 없음

[붙임]

태국 보건부 공지(No. 418) B.E. 2563(2020)
B.E. 2522(1979) 식품법에 의거 식품첨가물 규정, 조건, 방법 및 비율 개정판
(태국 보건부 2020년 9월 2일 공지)

현 상황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부 고시 식품첨가물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는 바이다.

보건부 고시 식품법 B.E. 2522(1979)에 따라 규정된 식품첨가물 관련 Section5, Section 6 (4), (5)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1항. 2018년 6월 21일 식품첨가물 관련 보건부 공지 No. 389 B.E. 2561(2018) Re: Food Additives(No.5) 의 Annex I, Annex II 는 폐지하고 이번 공지의 Annex I, Annex II 로 대체한다.

2항.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하기 전 이미 식품첨가물 관련 승인된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이번 공지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개정된 공지 내용을 준수해 조정해야 한다.

3항. 이 통지는 정부 관보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

2020년 9월 2일 공지

Anutin Charnvirakul

Minister of Public Health

(해당공지는 2020년 10월9일 정부관보 Vol.137 Special Part 237 Ngor에 게시됨)

※ 별첨 : Annex I 식품첨가물별 규정, 조건, 카테고리별 최대 사용량
Annex II 식품첨가물 규정을 위한 푸드 카테고리 구분